

강의평가개선연구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의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강의평가 결과 분석 등을 다루는 강의평가개선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, 심의한다.

1. 강의평가 항목(문항) 개발 등 강의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
2. 강의평가 결과 분석 및 분석보고서 발간
3. 강의평가 결과 활용 체제 구축
4. 강의평가관련 기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 (심의 및 시행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.

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7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고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 (주관부서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

제9조 (비밀유지)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 강의평가개선연구위원회 심의내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.